

# 엔지니어링사업처 육아휴직 대체인력 (계측제어설계) 채용 공고

우리공사는 다음과 같이 기간제 계약직을 채용 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.

2023년 3월 일  
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

## 1. 채용내용

- 고용형태 : 기간제 계약직(육아휴직 대체인력)
- 채용인원 : 1명
- 계약기간 : 12개월 (2023.05.25. ~ 2024.05.24)
  - ※ 공공부문 비정규직 가이드라인 및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닙니다.
- 보수수준 : 2,424,240원/월 (원천세 및 4대보험 등 공제 전)
- 담당업무 : 계측제어설계 지원(근무기간 중 부서 사정에 따라 업무가 조정될 수 있음)
- 근무지 : 한국가스기술공사 서울사무소(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463)
- 근무시간 : 주5일, 1일 8시간 근무
- 복리후생 등 기타 처우
  - 우리 공사 기간제 계약직원 운영기준에 따름
  - 숙소는 제공하지 않음
- 상세업무 내용
  - 플랜트 계측제어 관련 법규 및 설계 CODE 검토
  - 계측제어 설계도서의 누락, 오류, 문제점 등 검토
  - 현장조사, 관계법령, 기준설계지침 분석을 통한 설계도면, 시방서 및 사양서 작성
  - 도서 및 도면에 의거하여 세부자재 및 공사물량 산출 및 집계

## 2.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

구분	세부내용
지원자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성별, 연령, 학력, 전공 제한 없음</li> <li>○ 병역법 제76조(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)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</li> <li>○ 우리공사 「인사규정」등에 의한 채용 결격 및 제한 사유가 없는 자</li> <li>○ '23.05.25(목) 부터 근무 가능자(공사사정에 따라 변동가능)</li> </ul>
우대사항 (서류전형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플랜트 EPC 업무 경력자</li> <li>○ 계측제어 또는 전기/전자공학계열 전공 전문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</li> <li>○ 인정 국가기술*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보유자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인정 국가기술 자격 범위 :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「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」의 건설, 기계, 재료, 화학, 전기·전자, 정보통신, 안전관리, 환경·에너지 분야</li> </ul> </li> </ul>
가점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장애인등록자(전형단계별 만점의 5%)</li> <li>○ 「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」에 의한 보훈대상자(10% 또는 5%) (채용인원 3명 이하인 경우 보훈대상자 가점 미적용. 단,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)</li> <li>○ 경력단절여성*(전형단계별 만점의 5%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채용공고 전일부터 임용일까지 어느 회사에도 소속되어 근무하지 않는 여성으로, 최소 연속경력이 1년 이상으로써 합산한 경력단절기간이 1년 이상인 여성</li> </ul> </li> </ul> <p><b>* 2가지 이상 해당 시 중복 적용</b></p> <p><b>* 단, 면접전형 원점수로 4할 이상인 경우 가점 부여(가점 포함 총점 6할 미만인 경우 과락)</b></p>

○ 학위분야 인정 기준 : 대학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한 해당 분야 학위만 인정

○ 경력인정기준

1. 공인기관 등록 기술자 : 아래 공인기관 서류와 함께 “국민건강보험가입증명, 국민연금가입증명, 고용보험증명 중 택1”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경력인정
  - \* 기술자 등급은 공인기관의 경력증명서를 기준, 해당업무 경력기간으로 산정
  - \* 공인기관 : 한국건설기술인협회,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, 한국엔지니어링협회, 한국전기기술인협회, 한국기술사회 등 공인기술자 경력관리기관

2. 공인기관 미등록 기술자 : 아래 ‘가’ 또는 ‘나’ 서류와 함께 “국민건강보험가입 증명, 국민연금가입증명, 고용보험증명 중 택1”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경력인정

- 가. 공사 양식: [붙임 2-2] 경력증명서 양식 기준, 해당업무 경력기간으로 산정
- 나. 발급기관 서식: 경력증명서상 지원자격(경력)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업무분야와 근무기간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, 발급담당자 연락처를 반드시 명기

※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무효처리함

### 3. 전형절차 및 일정

#### □ 전형절차

- 1차 전형(서류전형)
  - 동점자 처리 기준: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
- 2차 전형(면접전형) : 블라인드 방식(개인신상 미제공)
- 최종합격자 결정: 면접점수 6할 이상인 자 중 서류전형(30%), 면접전형(70%) 합산 고득점자

#### □ 전형일정

구분	추진일정	비고
원서접수	'23.03.21(화) ~ '23.04.05(수)	○ 접수방법 : 채용사이트 접수 ( <a href="https://kogastech.recruiter.co.kr">https://kogastech.recruiter.co.kr</a> ) ※ '23.04.05.(수) 13:00까지 접수완료분에 한함 ※ 우편 및 방문 접수는 받지 않으며 상용도메인(gmail, naver 등)을 통하여 지원서 접수 시 스팸메일 처리되어 지원서가 반송될 수 있으니 이점 양지바랍니다.
서류전형 합격자 발표	'23.04.20(목)	○ 채용사이트 통보 ○ 서류전형 합격 예정인원 : 채용예정인원 1명의 5배수
면접전형	'23.05.04(목)	○ 장소 : 한국가스기술공사 서울사무소 (서울 강서구 강서대로 463 새싹타워 6층) ○ 인성 및 직무수행능력 등 평가
최종 합격자 발표	'23.05.16(화)	○ '23.05.25(목)부터 근무 예정

※ 상기 전형절차 및 일정은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#### 4. 서류제출

##### □ 제출서류 목록

구 비 서 류	제 출 시 기
○ 입사지원서(자기소개서 포함)	원서접수시 이메일 제출, 면접일 원본 제출
○ 개인정보동의서	
○ 경력증명서(담당업무 기재) 및 고용보험 가입 이력서 원본 1부	면접일 제출  ※ 해당자 면접당일 관련서류 미제출시 면접응시 불가
○ 취업지원(보훈)대상자 및 「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」에 의한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1부	
○ 주민등록초본 및 등본 원본 1부(생년월일만 표시) - 공고일 이후 일자로 발급하여 제출	
○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원본 1부	

※ 채용공고 마감일까지 취득 완료된 학위까지만 인정

※ 경력증명서는 해당 기관장 직인이 날인되고 입사일 등 날짜가 정확히 표기된 것에 한함

※ 자격증 등 제출서류 등은 발급기관에 진위 확인을 요청할 예정이며 입사지원자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

##### □ 경력인정기준

1. 공인기관 등록 기술자 : 아래 공인기관 서류와 함께 “국민건강보험가입증명, 국민연금가입증명, 고용보험증명 중 택1”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경력인정

\* 기술자 등급은 공인기관의 경력증명서를 기준, 해당업무 경력기간으로 산정

\* 공인기관 : 한국건설기술인협회,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, 한국엔지니어링협회, 한국전기기술인협회, 한국기술사회 등 공인기술자 경력관리기관

2. 공인기관 미등록 기술자 : 아래 ‘가’ 또는 ‘나’ 서류와 함께 “국민건강보험가입 증명, 국민연금가입증명, 고용보험증명 중 택1”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경력인정

가. 공사 양식: [붙임 2-2] 경력증명서 양식 기준, 해당업무 경력기간으로 산정

나. 발급기관 서식: 경력증명서상 지원자격(경력)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업무분야와 근무기간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, 발급담당자 연락처를 반드시 명기

※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무효처리함

## 5. 기타 채용관련

### 동점자 처리 기준

- 1순위 : 취업지원대상자(국가보훈)
- 2순위 : 「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」에 의한 장애인 등록자
- 3순위 : 직업기초 면접점수 고득점자
- 4순위 : 서류전형 고득점자(가점포함)

※ 기준 모두 적용 후 동점일 경우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

### 응시자 미달 시 진행방안 : 응시자 미달 시, 결격사유 등 제한 사항 없을 시 전원 합격

## 6. 유의사항

### 입사지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, 구비서류 미제출, 증빙서류 위·변조, 기재 내용이 증빙서류와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

###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입사지원서와 제출하는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신원조회 결과 채용 결격사유 발생 시 불합격 처리

### 불합격자의 채용서류 반환 등 :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름 - (보관기간) 최종합격자 발표 후 즉시 파기

### 면접일에 제출서류 미비 시 채용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서류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블라인드 채용으로 입사지원서 작성 시 출신지, 출신학교, 가족관계, 학력, 생년월일 등 편견을 야기할 수 있는 단어 사용을 금지하며 사용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
### 채용분야 간 중복지원은 불가하며, 중복지원 시 불합격 처리함. 또한 전형과정에서 응시자가 채용기준에 미달 할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

### 채용분야에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인원이 없을 수 있습니다.

### 응시원서를 불성실하게 기재하거나(기재착오, 누락, 입력조건을 채우기 위한 글자의 반복입력 등), 온라인 제출자료 누락, 연락불능,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, 응시원서의 성실 기재 및 합격자 발표일 등의 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### 합격 및 채용 취소

- 최종합격자 결정 이후부터 임용 후 1개월까지 해당 채용에서 임용 포기, 취소, 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당초 계획인원에 미달할 경우 예비합격자(최종 채용인원의 4배수)를 두어 결원을 충원할 수 있음

- 채용비위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된 직원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 구제에 활용하기 위해 전형절차별 예비순위 해당자(최종 채용인원의 4배수)를 확인하여 피해자 구제
- 청탁 등 부정행위로 인해 합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당해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입사지원서 및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 등 채용비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 및 채용을 취소하며 취소일로부터 5년간 우리공사 입사를 제한합니다. (접수된 서류 미반환)
- 최종합격자 결정 전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면접전형 참석자 전원에게 채용 결격사유 확인서 징구([붙임4] 채용결격사유 해당여부 확인서 참조)
- 최종합격자 발표 전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에 대한 진위확인(면허, 자격, 경력 등) 및 채용부서에 비위면직자 관련 사전조회 요청하여 확인(단, [공공기관 청렴포털] 비위면직자 사전조회 운영 잠정 중단 기간 동안은 ‘부패방지권의 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(확인서)’로 점검)

## 7. 불합격자의 이의신청

- 신청방법 : 한국가스기술공사 엔지니어링사업처 채용담당자로 문의 (엔지니어링사업처 한유하 과장, youha5160@kogas-tech.co.kr)
- 이의 신청기한
  - 서류전형 불합격자 :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~ 익일까지
  - 면접전형 불합격자 :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까지
- 이의신청 처리대상 : 채용 관련 부정행위 및 불합격자 관련한 이의신청 사항
-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: 채용과 무관한 문의 및 평가자 개인정보, 지적재산권 등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등
- 불합격자의 채용서류 반환 등
  - 최종합격자 발표 후 불합격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채용서류 반환할 예정입니다.
  - (반환청구방법) 본인이 신청한 「채용서류반환청구서」에 의함
  - (보관기간) 임용일로부터 90일
  - (개인정보보호) 보관기간 이후 반환하지 아니한 채용서류는 즉시 파기
  - (반환방법) 채용서류의 반환은 본인 직접 수령 및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함
  - (반환의무 예외)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및 회사에서 요구한 채용서류 외 응시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반환하지 않음

※ 인사규정 제5조(결격사유)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4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5.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7.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파면은 5년, 해임은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8.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
9. 공사에 제출한 채용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
10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
11. 최근 5년 이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
12. 「형법」 제303조 또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13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

2023. 03.

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